



제 202500529 호



형식승인서

신청인 성명 : 윤철구

상호 : (주)서한에프앤씨

사업장주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샛강영길 59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·제10항 및 제38조제1항 및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·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합니다.

1. 품명 완강기지지대

2. 형식 바닥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, 회전각도 360°

3. 형식승인번호 지지25-7

4. 조건

5. 비고

2025년 06월 02일

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


검사성적서

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32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500529

페이지 : (1) / (총 2)

1. 신청인

원본 재발급

- 업체명 : (주)서한에프앤씨
- 주 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샛강영길 59
- 접수번호 및 접수일 : 제2500249호, 2025. 04. 23.

2. 검사성적서의 용도 : 형식승인용

3. 검사대상 종별(품명) : 완강기지지대

4. 검사기간 : 2025. 04. 23. ~ 2025. 06. 02.

5. 검사방법 : 소방청고시 제2023-30호(2023.07.12.)

6. 검사장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
7. 검사환경

- 온 도 : $(18.2.0 \pm 5.0)^\circ\text{C}$, 상대습도 : $(50 \pm 7)\% \text{ R.H.}$

8. 검사결과 : 합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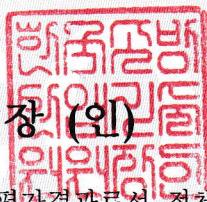
※ 첨부 : 세부 형식시험 결과(2 페이지 참조)

확인	실무자 성명 : 이 용석	기술책임자 성명 : 권순관
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위 성적서는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니다.

2025년 06월 02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(인)



- 비고 1.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으며, KS Q ISO/IEC 17020 및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.
2.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,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,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.
3. 이 성적서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(상기 전화번호 참조)에게 연락바랍니다.

[첨부]

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32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500529

페이지 : (2)/(총 2)

형식시험 결과

업체명	(주)서한에프앤씨	형식승인번호	지지25-7
종 별	완강기지지대	형 식	바닥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, 회전각도 360°

조 항	항 목	기 준	결 과			비고
			시료 (개)	검사결과	판정	
제16조	지지대의 구조	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5	적 합	합 격	
제17조	최대사용하중 및 최대사용자수 등	최대사용하중이 1 500 N 이상의 하중인지 여부	2	적 합	합 격	
		최대사용자수(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함)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(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함)으로 함				
제18조	재료	지지대는 금속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, 비내식성 재료일 경우 내식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벽부착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(KS D 3698)를 사용하는지 여부	1	시험생략	합 격	*
		지지대 내식가공의 확인은 염수분무시험방법(중성,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(KS D 9502))에 의하여 5회(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,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) 시험하는 경우 부식생성물이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여부	1	시험생략	합 격	*
제19조	강도시험	지지대는 연직방향으로 최대사용자수에 5 000 N 을 곱한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없는지 여부	2	적 합	합 격	
제20조	충격시험	지지대를 제조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한 후, 표준강하속도를 가지는 시험장치 또는 특정 완강기를 지지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부착부분으로부터 강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0.5 m 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의 충격하중으로 낙하시키는 경우에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여부	2	적 합	합 격	
제21조	표시	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5	적 합	합 격	

※ 기타 : “*”표시는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2항,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」 제2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.

“끝”